

##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 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등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을 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 1. 신청대상 및 시기

- 신청대상: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기관
- 신청시기: 상시접수
- ※ 교육훈련기관은 변경신청 사유 발생 1주일 이내에 신청

### 2. 변경인정 평가대상

- 평가인정사항 중 변경될 경우, 평가인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제외

#### ❖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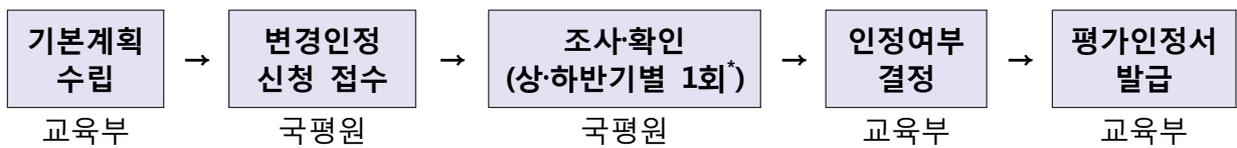
- 오기(誤記), 누락(漏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재의 최신 개정판으로의 변경
- 평가인정신청 당시 보고한 면적 이상으로 강의실을 변경하는 경우
- 평가인정 신청 당시 보고한 실습기자재 수준 이상의 실습기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급수를 변경하는 경우
- 기타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변경인정 기준

- 변경사항을 평가인정 당시 평가인정기준으로 평가 후, 당초 평가인정 결과와 동일하거나 개선된 경우에만 인정

- △ (기본요건) 인적자원, 학습시설·설비 등
- △ (운영여건) 기관운영 및 행정, 기관재정, 교육과정 운영 여건, 기관 특성화 및 질 관리 등
- △ (학습과정) 교·강사 전문성, 수업, 학업성취도평가 등

### 4.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절차



※ 단, 변경인정 처리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4주 이내 시행

### 5.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유효기간

- 당초 평가인정 유효기간과 동일

### 6. 향후 추진일정

※ 세부일정은 변경 가능

주요 내용	상반기	하반기
평가인정사항 변경 신청 접수	상시	
평가인정사항 변경심사 평가단 구성	4월	6월
평가인정사항 변경심사	5~6월	7~8월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최종 확정	6월	8월

※ 차후년도 부터는 상반기 심사 12월 ~ 2월에 실시

【붙임1】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상 변경 불가능한 사항(예)

【붙임2】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 지침 상 변경 불가능한 사항

학습과정명, 기관등록번호,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총 정원 등은 변경이 불가능함.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기관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학습과정명

- 표준교육과정 상 학습과정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변경 불가. 단, **표준교육과정 상의 학습과정명이 변경된 경우, 학습과정명 변경 가능**

◦ 기관등록번호

- 운영 중인 기관을 폐지하고, 다른 형태의 기관으로 신고하는 등 기관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등록번호 변경 신청 불인정

※ (예) 기관등록번호가 변경 불가능한 경우

甲기관은 학원법 상의 학원으로 등록하여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시설로도 등록(기관 등록번호 별도 부여)하여 동일 대표자·소재지(주소는 같으나 세부 학습시설·설비는 구분)에서 별도과정을 운영함. 이후 甲기관은 평가인정 유효기간 내에 학원법 상의 학원을 폐지 신고하고, 학원명의로 운영해오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대표자·소재지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기관등록번호만 변경(직업훈련시설)하여 인정해줄 것을 신청함. 이러한 경우는 기관의 성격이 변한 것으로 불인정

- 지위승계 등 법령을 근거로 기관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승인

※ (예) 기관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경우

乙기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학교법인 B → C)함. 이후 지위승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다시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됨. 법령에 근거한 기관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정

◦ 교육훈련기관 소재지

- 소재지와 함께 학습시설·설비 등 학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체를 변경인정 신청하여야 하고, 소재지만 변경 신청하는 경우 불인정

◦ 총 정원

-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롭게 평가인정을 받은 후, 기존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폐지 신고 후 운영

16년 3월, 甲기관은 '15년 평가인정 결과에 따라 총정원 300명으로 A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甲기관은 A학습과정의 총 정원을 400명으로 증가시키려고 함

→ '16년 평가인정 신청 시, 甲기관은 총 정원 400명으로 A학습과정을 평가인정 신청. 평가인정 결과 승인된 경우, '15년 평가인정에 따른 A학습과정을 폐지 신고 후, '16년 평가인정 결과에 따라 총 정원 400명으로 운영

**붙임2****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20.>

**평가인정사항**[ ] **변경인정신청서**[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인정) ※ (신고) 14일
------	-----	-------------------------

신청기관 (신고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평가인정번호	제 호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변경내용	학습과정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과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인정사항에 대 [ ]변경인정신청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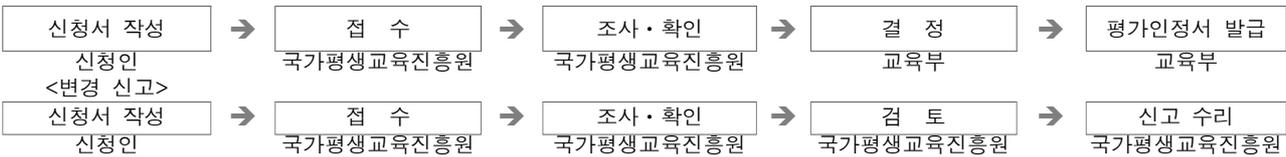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 리 절 차**

<변경 인정> ※ 처리기간은 유동적일 수 있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